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8.

발 의 자 : 신장식·박은정·차규근
임미애·김선민·서왕진
강경숙·김준형·황운하
김형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,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.

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,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,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·외국어,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제2호 및

제10조제2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실기로 인한”을 “시기를 놓쳐 발생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단서 중 “해소된”을 “없어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손실의 보상 등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	제7조(손실의 보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4·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, 어업활동의 <u>실기로 인한</u>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	2. ----- ----- <u>-시기를 놓쳐 발생한-</u> -----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배상금 등의 지급신청) ① (생략)	제10조(배상금 등의 지급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·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<u>해소된</u>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없어진</u> ----- -----.

한다.	
-----	--